

## 군산시 공고 제2014-140호

『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』에 있어 『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4년 1월 28일

## 군 산 시 장

###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“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”를 “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”로  
조례 명칭 변경

나. “보육정보센터” 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” 로 명칭 변경

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, 제12조)

#### 3. 의견제출

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(참조 : 여성아동복지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) 의견제출 사항

1)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
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할 곳 : 우 573-703 / 군산시 시청로 17

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(전화063-454-3222, 팩스063-452-9477)

다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직접방문 등 어느

방법이든 가능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지원계(전화 063-454-322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군산시 조례 제 호

## 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군산시 보육정보센터 운영 조례”를 “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“군산시 보육정보센터(이하“센터”라한다)”를 “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(이하“센터”라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보육정보센터의 장과”를 “육아종합지원센터 의 장과”로 한다.

제4조 “보육정보센터는”을 “육아종합지원센터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의 “군산시보육정보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”를 “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